

○ ○ 교 도 소

※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수 신 ○○ 보호관찰소장

발 신 ○ ○ 교도소장

직인

제 목 : 구금(구금해제결정) 통보서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[]제2항, []제4항, []제5항에 따라
아래 피부착자가 다음과 같이 []구금, []구금해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성 명			
주민등록번호			
주 소			
석 방 후 거 주 예 정 지			
구 금 일 시 (구금해제 예정일시)		구 금 사 유 (구금해제 사유)	
담 당 자 및 연 락 처			
비 고			